

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한 기 영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
- 현 조례상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,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부위원장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대행을 함으로써 보조대상기관인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보조 심의를 주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
-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경비보조심의회는 총 7회 개최되었고 이 중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것은 1회로 나머지는 모두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심의를 주관하였습니다.

- 교육경비보조심의의 주관기관인 시가 아닌 보조대상기관인 교육청에서 심의를 주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